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बंदिमार्स पार्वेष्ट्रण्य			
		배포일시	2020. 6. 15.(월) 총 8 매(본문 5)	पारिण्य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개발정책과	·과장 오성익, 사무관 권지현, 주무관 김민성 ·☎ (044) 201-3438, 3449				
보도일시		2020년 6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14.(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토지은행, 장기미집행 공원·도시재생에서 적극적 역할 추진

- 15일 심의위서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29)〉 심의·의결
- 향후 10년간 토지은행에 총 9조원 규모 토지 비축 목표
- 코로나19 관련 한계기업 지원 등 활용방안 다각화도 모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비축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토지비축법 제7조)
- □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서,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하여,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 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 □ 토지비축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토지 비축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비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평가】

- □ 토지은행은 지난 10년간 총 2조 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하였고, 비축을 실시한 33개 사업 중 29개 사업, 총 2조 3,494억 원의 토지를 공급하여 공공 용지의 적기 공급에 기여하였으나,
 - 전체 비축 사업은 안정적인 자금 회수 등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선시한 비축제도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으로 추진하였다.

【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시장 상황에 안전망 역할을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토지비축 제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비전은 '**토지비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함께 사는 국토의 실현'으로서,
 -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용 토지의 원활한 공급 등 단순한 토지 수급 관리 수단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지비축 제도 정착을 지향하였다.
 - * 예시 : '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예정이었던 장기 미집행공원을 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총 18개소, 약 100만㎡, 1,843억 원 상당) 등

【향후 토지수요 전망 및 비축대상토지 분석】

□ 비축 토지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기 수립된 각종 개발계획과 주요 부문별 법정계획을 검토하여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동안 **토지비축 수요**를 **총 402.8km²**(연평균 40.3km²)로 추정하였다.

- 이전 계획에 비해 **연평균** 36.7~49.7k㎡가 감소된 것으로, 부문별 총 수요는 공공택지 104.6k㎡, 산업단지 135.6k㎡, 도로용지 92.8k㎡, 철도용지 55.1k㎡, 항만배후단지 13.4k㎡, 물류단지 1.2k㎡ 등이다.
- □ 향후 비축대상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토지 이용현황 분석을 기초로, 미개발지 내의 개발잠재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 도심 내 토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개발지 내에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향후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개발잠재지를 분석하였다.
 - 선별된 토지군 안에서는 접근성, 사회·경제 특성, 토지 특성 등 비축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지비축종합지수'를 적용하여 비축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구분 기준 구분 중요변수 가중치산정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접근성 고용접근성 교육시설접근성 ♦ 지역별/도시별로 서로 인구·고용밀도 사회경제특성 토지비축 다른 가중치 적용 평균연령 종합지수 평균주택가격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 가격특성 평균토지가격 역별로 최종선정 토지가격상승률 도시쇠퇴지역 토지특성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참고) 토지비축종합지수 산정방법

【토지비축 목표 설정 및 재원조달 방안】

□ 제2차 종합계획의 비축목표는 제1차 계획기간의 비축 실적을 고려 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 토지은행은 **토지은행 적립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채 발행**, **민간 자본** 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을 토지 비축에 **활용**할 수 있으나, **지난 10년간**의 재원 조달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 향후 공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토지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REITs) 등 **민간 자금 유치** 등 재원 조달 방안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비축대상 다양화 등 향후 추진 전략]

- □ 종전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 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에 한정하여 토지 비축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공 사업의 선제적인 토지비축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 지자체와 매도자간 매도의향서 체결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의 예산 확보 노력, 비축 토지 매입확약서 체결 등 노력을 평가하고. 비축 타당성 조사를 선행
- □ 그간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활용 가능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관련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웠으나
 - '토지시장 안정' 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비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코로나19 관련 한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매각이 필요할 경우, 토지 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 수요가 있는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 IMF,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반비축 제도를 활용하여 LH가 토지채권을 발행하고, 역경매로 매입대상을 결정하여 총 3조 3,383억 원 매입한 바 있음
-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의 절차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오성익 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 주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는 토지은행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 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토지은행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 공익목적으로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 · 적소 · 저가에 공급하는 토지수급관리시스템
- 공공용지의 사전확보, 수급조절을 통한 지가안정, 토지의 계획적 관리 및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토지 비축대상

- ㅇ 비축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
- (공공개발용 토지) 공공개발수요를 충족하고자 비축하는 토지로 SOC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 토지
- * '10년~'19년 도로·산단, 문화재 등 33개 사업 2조 3.629억원 비축
- (수급조절용 토지) 토지시장 안정 및 장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 수급불균형이 예상되어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토지

□ 비축대상 비교

구 분	공공개 발용	수급조절용	
대 상	모든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가능지 등 일반토지	
비축목적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토지시장 안정	
비축수단	협의, 수용, 매수청구	협의, 선매	
공급가격	원가 기준	감정가격 기준	

□ 재원조달

○ 공사채 발행, 토지은행적립금, 비축토지 수익금 등

참고2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주요 내용

- 1차 종합계획(2010~2019)에 이어 향후 10년간(2020~2029) 공공토지 비축의 기본 방향을 수립
- •1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20~2029)

- (기본방향) '비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함께 사는 국토의 실현'을 비전으로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축제도'를 목표
-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방쇠퇴 및 지역불균형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반영
- **(토지수요)** 2020~2029년 SOC 등 6개 부문 총 **402.8㎢**(연 40.3㎢)
 - * 공공택지 104.6km², 산업용지 135.6km², 도로 92.8km², 철도 55.1km², 항만 등 14.6km²
- (비축대상)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 지원 등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를 비축
- 수용권이 없는 공공사업용 토지도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대상에 추가
- * 도시재생 등 사업계획 수립 된 토지 대생(협의취득 후 공공개발용 토지가격으로 공급)
- (비축규모) 제2차 종합계획의 비축목표를 법상 토지 취득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로 구분하고,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운용
- (비축재원) LH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 토지은행적립금 활용방안 검토
 - * '20.5월 현재 토지은행적립금 5조 552억원 적립

참고3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은행 비축신청 현황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신청면적 (m²)	추정 용지비 (백만원)	비고 (신청기관)
2019년	소 계 (9)		679,236	127,500	
	① 함지골공원	'19.5~'20.12	54,507	5,000	부산 광역시
	② 금강공원	'19.5~'20.12	179,696	39,900	
	③ 안락아파트지구 제3공원	'19.5~'20.12	948	4,500	
	④ 가덕공원	'19.5~'20.12	34,077	8,000	
	⑤ 덕발공원	'19.5~'20.12	3,989	7,000	
	⑥ 대항공원	'19.5~'20.12	14,601	5,300	
	⑦ 부산묘지공원	'19.5~'20.12	96,909	11,000	
	⑧ 달음산공원	'19.5~'20.12	194,656	11,800	
	⑨ 황성공원	'19.1~'23.6	99,853	35,000	경북 경주시
	소 계 (9)	사업기간	320,522	56,779	
	① 노대공원	'21.1~'24.12	62,464	7,030	
	② 모충공원	'21.1~'24.12	60,248	6,581	
	③ 반룡공원	'22.1~'24.12	18,089	2,466	경남 사천시
2020년	④ 송포공원	'21.1~'24.12	9,857	3,075	
	⑤ 월성공원	'21.1~'23.12	31,430	5,827	
	⑥ 매곡어린이공원	'20.6~'25.12	1,700	1,700	
	⑦ 동운제2어린이공원	'20.5~'23.12	1,800	1,500	광주 광역시
	⑧ 신안제1어린이공원	'20.6~'25.12	2,785	1,800	
	⑨ 명심근린공원	'20.6~'24.12	132,149	26,800	충북 청주시